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863
-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 외 13명
-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 나. ‘청년기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 라.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 마.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은

- 의무적으로 청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바. 청년교육체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청년교육 관련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 사.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아.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자.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내에 포함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 차. '청년허브'에 관한 사항을 '청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20조제1항).
- 카. '청년지원기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
- 타. '청년지원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5항).
- 파.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6항).
- 하. '청년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입법예고(2020. 8. 26. ~ 2020. 9. 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이 제정(각각 2020. 2. 4., 2020.8.4.) 및 시행(2020. 8. 5.)됨에 따라 동 법령 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반영하고, 서울시 청년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 제정된 「청년기본법」 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참고 1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 **(정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 **(청년의 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 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청년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안 제3조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상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p>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원칙: 15세~29세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2쪽) 인용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9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3쪽) 재인용

○ 서울시의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세 ~ 만34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세 ~ 만34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세 ~ 만39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세 ~ 만39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세 ~ 39세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세 ~ 29세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정책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등 서울시 청년의 범위에 대한 통일적 운영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도 청소년의 범위¹⁾와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바,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청년층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청년기업(안 제3조제4호)

- 안 제3조제4호는 청년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3조의 “청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청년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청년기업”이란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u></p> <p>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u>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u>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

- 청년기업의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고,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는 청년이 창업자인 ‘청년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나, 청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실효적인 지원 방법 없이 모든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미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4조제4항의 재정적 지원이 포괄적 보조금 지원근거로 사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차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7., 2017. 7. 13., 2019.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
 -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는 현행 “청년정책위원회” 를 「청년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에 위촉위원의 1/2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시행령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p>	<p>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 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p>	<p>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조정위원회: 2분</p>

사항을 십의 한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사항을 십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

- 청년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4명을 포함한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위촉직 위원(15명) 중 청년위원은 9명으로, 1/2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년정책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위원명	주요경력	청년여부
1	당연직	서정협	• (현) 서울특별시시장 권한 대행	-
2	당연직	신종우(1968)	• (현) 경제일자리기획관	-
3	당연직	유연식(1969)	• (현) 문화본부장	-
4	당연직	김성보(1968)	• (현) 주택건축본부장	-
5	위촉직	서윤기(1970)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6	위촉직	한기영(1979)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7	위촉직	강동길(1964)	• (현) 서울특별시의원	X
8	위촉직	최은영(1970)	• (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행정사무관	X
9	위촉직	김희성(1989)	• (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
10	위촉직	홍서윤(1987)	• (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 (전) 한국방송공사 앵커	○
11	위촉직	이상엽(1980)	• (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윤리위	X

연번	구분	위원명	주요경력	청년여부
			원회 위원	
12	위촉직	최지희(1991)	• (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공동대표	○
13	위촉직	한지혜(1984)	• (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 -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
14	위촉직	이 한(1991)	• (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 (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	○
15	위촉직	장재열(1985)	• (현)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 대표 - (전) 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
16	위촉직	이동현(1981)	• (현) 효성감정평가법인 이사 -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
17	위촉직	유민아(1993)	• (현) 비이(BE) 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대변인	○
18	위촉직	김현수(1993)	• (현) (사)청년과미래 사무총장 - (전) 미디어라인 편집장	○
19	위촉직	김애란(1990)	• (현) 힐데와소피 대표 - (전) 공감씨즈(통일교육 사업개발)	○

4) 청년의 참여 확대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2015년 처음 도입한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근거로, 2019년까지 사업명을 “서울 청년활동보장”으로 하여 지원금 또한 “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을 함께 사용하였음.
- 2020년부터 동 사업명을 “서울 청년수당”으로 변경하였고, 활동 지원금이라는 표현 대신 “청년수당”으로 변경한바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조례에서 “활동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년수당”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하고 대 시민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 자문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청년청에는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위원회, 청년시민회의,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새로 구성하려는 청년참여 자문회의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이나 구성 및 운영계획 없이 포괄적 자문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u>강구하고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능력 개발과 교육 지원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제4항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출자·출연한 기관과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 청년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받도록 하고, 민간 사업장에서도 청년교육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11조제5항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은 청년자율예산제에서 제안된 사업(청년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서울청년시민 정책기획자 양성과정)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청년의 <u>능력 등의 개발</u>)</p> <p>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 신 설 ></u></p> <p style="text-align: right;"><u>< 신 설 ></u></p>	<p>제11조(청년의 <u>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u>)</p> <p>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u>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안)〉

소 관 부 서	정 책 제 안 명	구 분	계	자율예산	본 예산
계			27,736,997	26,965,497	771,500
타부서 소계			4,631,497	4,631,497	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30 차세대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	성평등인권 주 거	110,000 500,000	110,000 500,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시설 운영지원	사회안전망	211,497	211,49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일자리노동	216,000	216,000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과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교육 영상 제작물 제작 및 둘레길 공모전 개최	기 후 환 경	245,000	245,000	
문 화 본 부 과 문 화 정 책 과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문 화 예 술	610,000	610,000	
	지역, 사회 연계 주도적 활동 경험을 쌓는 예술 (대학생·청년예술가의학교박배움터)	문 화 예 술	1,400,000	1,400,000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문 화 예 술	255,000	255,000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Art&Tech)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사업	기 획 2	984,000	984,000	
시 민 건 강 국 과 시 식 품 정 책 과	채식하기 편한 서울	기 후 환 경	100,000	100,000	
청년청 소계			23,055,500	22,334,000	721,500
청년청 (운영지원단)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모델 구축	시 민 참 여	50,000		50,000
청년청 (청년사업팀)	청년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 민 참 여	150,000		150,000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사회안전망	1,500,000	1,500,000	
	청년 커뮤니티 협력강화 지원사업	시 민 참 여	301,500		301,500
	청년, 공공일자리'1,000개의 꿈' 추진	기 획 3	18,024,000	18,024,000	
청년청 (청년인재팀)	서울청년시민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기 후 환 경	50,000		50,000
	청년활동 인증 시스템 도입	시 민 참 여	110,000		110,000
청년청 (청년협력팀)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기 후 환 경	610,000	610,000	
청년청 (청년지원팀)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시 민 참 여	600,000	600,000	
	서울시 청년쿠키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광진)	기 획 1	1,400,000	1,400,000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	기 획 1	200,000	200,000	
청년청 (청년공간팀)	청년공간 특화브랜딩 및 활성화 사업	시 민 참 여	110,000		110,000

- 청년정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년청은 서울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육의 근거만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청년 관련 교육”이라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교육을 민간 사업장에서 시행되도록 권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11조제5항의 서울시에서 직접 청년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6) 청년지원기관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을 청년지원기관으로 하여 각각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청년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②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다.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 신 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허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지원기관 기능 구분〉

연번	기관명	운영방식	2020년 주요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상 기능
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민간위탁 (서울시)	1.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청년정책 개발 및 생태계 구축 -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 정책 및 활동연구 2. 실험과 시도를 통한 청년생산활동 투자 - 청년활동지원 (커뮤니티/직업실험/프로젝트) - 청년공간지원 (운영/입주및활성화/자립실험) 3. 세대와 지역을 넘는 교류협력을 통한 청년자산마련 - 국내교류 - 지속가능한 청년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 홍보 및 아카이빙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시)	1. 청년수당참여 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 사회진입 청년의 정책사업 동기화를 위한 기본교육 실시 - 사회진입 청년의 자기주도적 진로모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진입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 지원사업 - 문턱낮은 청년마음건강 서비스 지원 - 청년자율예산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지원 3. 서울청년센터(Youth Center) 운영지원 4. 정책연구, 홍보, 네트워크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서울청년 센터	민간위탁 (서울시 또는 자치구)	1.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2. 청년정책 및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 3.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4. 지역·권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사업 실행'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서울청년센터 현황〉

'20년 서울청년센터 현황(2020.8월 기준), 9개소 운영, 3개소 조성

No	지역	위 치(규모)	형식	개소 (예정)
운영(예정)				
1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329㎡)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신림동 쓰리룸) 활용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자치구 민간위탁	(완료)
2	은평구	은평구 대조동 9-14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새싹공간) 활용하여 운영	자치구 민간위탁	(완료)
3	강동구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403㎡)	민간임대(계약완료)	5월
			자치구 민간위탁	(완료)
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2(347㎡) *설계중, 6월 민간위탁 추진중(현재)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자치구 민간위탁	
5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공사중, 8월 민간위탁 공고 준비중(자치구)	구유지(기부채납)	10월
			자치구 민간위탁	
6	금천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12호(293㎡) *무중력지대 재위탁시 청년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서울시 민간위탁	(완료)
7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591-53외 1필지, 3층(480.71㎡) *공사중	국유지(조성중)	10월
			서울시 민간위탁	
8	노원구	상계동 731-5외 1필지, 12층(297㎡) (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	민간임대(계약완료)	8월
			자치구 민간위탁	
9	성동구	성동구 왕십리로 350(도선동 292), 3-4층 (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	민간임대(계약완료)	7월
			자치구 민간위탁	
조성(예정)				
10	성북구	대상지 물색 중	매입하여 리모델링	'21.1
			자치구 민간위탁	
11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369-8번지(345㎡) *5층건물 신축중(3개층 활용예정)	신축(조성중)	'21.9
			자치구 민간위탁	
12	서초구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서울교통공사와 임대계약(예정) 후 리모델링 추진(예정)	임대	'21.1
			서울시 민간위탁	

'21년 서울청년센터 현황 / 4개소 운영

No	지역	위치(규모)	형식	개소 (예정)
운영(예정)				
1	성북구	대상지 물색 중	매입 후 리모델링	'21.1
			자치구 민간위탁	
2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369-8번지(345㎡) *5층건물 신축중(3개층 활용예정)	신축(조성중)	'21.9
			자치구 민간위탁	
3	서초구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서울교통공사와 임대계약(예정) 후 리모델링 추진(예정)	임대	'21.1
			서울시 민간위탁	
4	광진구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5 2층,3층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무중력지대 광진구) 활용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21.1
			자치구 민간위탁	

□ '22년 이후 서울청년센터 현황

구 분	'21년 완공(4개소) * '22년 운영예정	'22년 완공(6개소) * '22~'23년 운영예정
설치지역(예정)	강서·강동(역세권 청년주택)+2개소	용산·송파·연희·중산(역세권 청년주택)+2

※ 강서, '21년 11월~12월 준공 예정 / 강동, 준공일정 미정

- 안 제20조제2항의 청년허브의 기능을 살펴보면,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는 새로 추가된 기능이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등에 따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바, 서울시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에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또한,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 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등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일자리 정책과’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투자창업과’의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는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로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부분이 신설되었으나,
 -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직영 또는

민간위탁)를 평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조례상의 청년지원기관에는 청년활동공간이자 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조례의 통합·조정 및 서울시 청년지원사업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

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695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청년기본법 시행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

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4장 보칙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30901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및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